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통일부	보 도 자 료		평화와 번영의 한반도
보도일시	7. 9.(금) 11:00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	총 3쪽(붙임 1쪽 포함)
배포일시	2021. 7. 9.(금)	담당부서	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
담당과장	이창성 (02-2100-5690)	담 당 자	김예린 (02-2100-5693)

통일부-통일연구원 간 활발한 소통·협력을 통한 통일역량 강화

- 두 기관 간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-

o 통일부(장관 이인영)와 통일연구원(원장 고유환)은 2021년 7월 9일 통일부에서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을 대비한 두 기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관 간 인적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

o 업무 협약 체결식에는 최영준 통일부 차관과 통일연구원 고유환 원장을 비롯해 통일부와 통일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.

o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두 기관은 정책연구협의회* 정례화 및 인적 교류, 통일 및 북한 관련 연구 과제 추진과 상호 자문, 관련 정보 및 자료 공유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.

* 두 기관 간 정기적으로 남북관계 현안 등에 대해 토론 및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체

o 통일부와 통일연구원은 그 동안 업무 협약을 체결해 정책 소통을 확대해 왔으며,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계기로 두 기관의 동반 상승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.

※ 붙임 : 통일부-통일연구원 업무 협약서 1부. 끝

붙임 **통일부- 통일연구원 업무협약서**

통일부와 통일연구원(이하 "양 기관"이라 한다)은 양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상호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양 기관의 호혜적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교류를 촉진하고 공동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을 대비한 양 기관의 통일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신의성실 및 상호 협력) 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간 신의와 성실로 적극 협조한다.

제3조(협력 내용) 양 기관은 다음 각 호(이하 "협력사업"이라 한다)의 실천을 위해 협력한다.

1. 정책연구협의회 정례화 및 인적 교류
2. 통일 및 북한 관련 연구과제 추진 및 상호 자문
3. 통일 및 북한 관련 정보 교류 및 자료 공유
4. 통일 및 북한 관련 학술회의, 포럼 등의 공동 구성 및 역할 분담
5. 기타 양 기관이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비용 부담) 양 기관은 업무협력 및 공동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.

제5조(대외 홍보) 양 기관은 업무협력 및 공동사업 추진결과를 외부에 홍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상대 기관의 동의를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6조(협약서의 효력) ①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 ② 본 협약은 효력 발생 후 1년간 유효하며,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이의 제기가 없는 한 종료 후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.

제7조(권리의무의 승계) 본 협약 체결 후 양 기관의 명칭, 대표자 등의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이 협약에 따른 권리·의무를 포괄 승계할 수 있다.

본 협약은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1년 7월 9일

통일부	통일연구원
차관 최 영 준	원장 고 유 환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